

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
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(☎ 044-201-3770)

- ▶ 위반 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되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집니다.
- 그동안 법령 위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 벌금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,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최초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법규 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발적 상시유지·관리가 가능합니다.
- 아울러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토록 되어 있는 휴게 시설 등의 공적공간(공개공지,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)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를 의무화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관리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, 방식 개선하여 매매파해, 공개공지 사적 차단

<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기재시기 개선 및 건축물점검보고일 등의 기재>

- ▶ 추진배경 :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
- ▶ 주요내용
 - ①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
 - ② 건축물대장에 점검보고일자, 다음점검기간 등을 기재 및 관리
 - ③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도에 추가로 공적공간(공개공지 등) 현황 작성을 의무화
- ▶ 시행일 : 2014.1